

- 권역별 맞춤형 건강돌봄 건강이랑서비스 -
종로구 임기제공무원 (물리치료 · 운동처방) 채용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물리치료 · 운동처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업무내용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1명	○ 권역별 맞춤형 건강돌봄 건강이랑서비스 추진 - 주민 참여 건강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모델 개발 (일상생활 속 통증관리, 운동 프로그램 등) - 주민 서로 돌봄을 위한 '지역 조직화' 지원 (주민 주도 지역 건강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2. 법령 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3. 응시 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가. 일반 응시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곤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직무 분야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전문 자격증(건강운동관리사 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 직무에 따른 개별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실무경력 분야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물리치료, 운동처방 분야 근무 경력

4.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시간 : 월~금, 1일 7시간, 주 35시간

나. 근무장소 : 4권역 건강이랑서비스센터(종로구 성균관로1길 6-3)

※ 근무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구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0,967천원	36,357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의료업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5. 원서접수 및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4. 3. 12.(화) ~ 3. 25.(월) 평일 근무 시간(09:00~18:00)에 한함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공휴일·주말 제외
- 접 수 처 : 종로구보건소 지역건강과(2층) 권역1팀(02-2148-3793)
-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종로구보건소 2층 지역건강과
- 접수방법 : 방문(대리 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 수수료 동봉(시선제 라급 : 5천원)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대리 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퀵서비스, 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나. 시험 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 발표
	일시	장소	
2024.3.26.(화)	2024.3.28.(목) 14:00	종로구보건소	2024.3.29.(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다. 1차 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종로구 홈페이지, 종로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음

라.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점수 70점 이하 탈락)

마.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서울시 종로구 홈페이지, 종로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고문(채용공고)에 첨부된 양식사용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천원 (납부처 : 종로구보건소 3층 민원실)
-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여권용(3.5cm×4.5cm) 사진
(면접 시 본인 확인용)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 직무 분야 자격요건에 맞는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사. 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차.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 해 인정
-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 및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응시자가
1인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홈페이지, 종로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종로보건소 지역건강과(☎02-2148-3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